

#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10
----------	------

2023년 9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4일 박춘선 의원 외 19명(찬성 33명)
2.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9월 1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박춘선 의원)

#### 1. 제안이유

- 현재 위기에 처한 저출생 문제의 주요 대응 정책으로 난임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시술비용 지원 및 난임 우울증 심리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난임은 생식건강과 관계된 부분으로 영양과 운동 등 건강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조례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증진 및 임신과 출생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로 난임부부

를 위한 건강지원 사업을 신설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2023. 8. 24.~ 2023. 8. 28.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 정부는 2006년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이후 ‘난임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며, 10여 년 이후인 2016년 12월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 난임부부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운영 중임<sup>1)</sup>.
- 그런데 생식건강과 관련된 난임은 영양과 운동 등의 건강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간과되고 있어 이를 조례에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임신과 출생률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u>&lt;신설&gt;</u> 4. (생략) ② (생략)	제7조(지원사업)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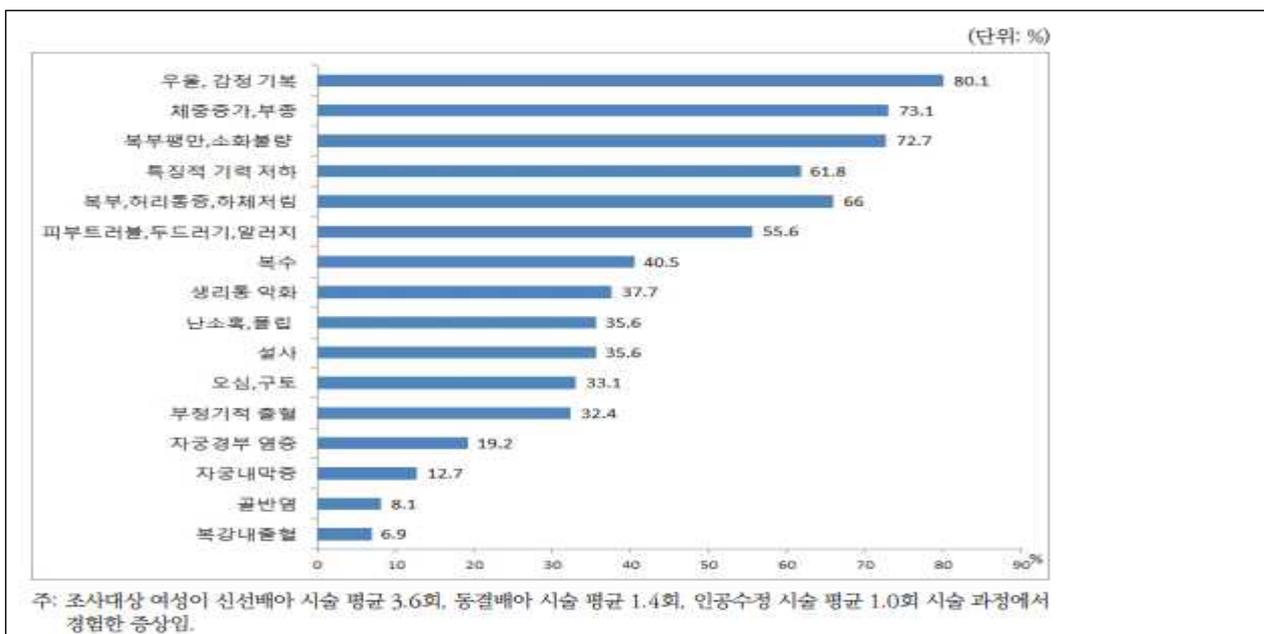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p33, 179.

## 2 검토의견

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을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조작하여 임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난임 시술은 의료시술임. 특히 시술의 특성상 여성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체외수정 시술 경험여성(432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경험증상을 조사한 결과, 우울 및 감정기복을 경험한 여성이 80.1%, 체중 증가·부종(73.1%), 복부팽만·소화불량(72.7%), 복부·허리통증, 복부·하체 저림 증상(66.0%), 평소와 다른 특징적인 기력 저하(61.8%), 피부트러블·두드러기·알러지(55.6%)를 경험함<sup>2)</sup>.

< 체외수정 시술과정에서의 시술여성의 주관적 증상 및 부작용 경험실태 >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p204.

- 이처럼 난임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 또는 질환을 관리하고 난임부부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술비용 지원 외에도 건강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이하: 법)」에서도 가임기 여성을 포함하는 모성(법 제2조의2)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임(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부여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모성”이란 임신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 10. <생략>.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에서도 시장에게 난임부부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제안이유에서 “난임은 생식건강과 관계된 부분으로 영양과 운동 등 건강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임신과 출생률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임을 밝혔지만, ‘영양’과 ‘운동’ 등의 건강지원과 난임부부 임신 및 출산 관련성에 관한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sup>3)</sup>이므로, 향후 과학적으로 효과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난임부부 건강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안선미, 최승아, 전병율(2021),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여성에서 평균 신체활동량과 6개월 내 임신 성공 여부: 전향적 난임부부 코호트 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5(2), 81-87.

(연구목적) 신체활동은 혈관 확장을 유도하며 많은 장기의 관류를 개선하며 생식계에 공급되는 혈류량 또한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임신 및 임신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나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임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신체활동과 임신율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자들은 시험관을 진행하고 있는 난임 여성들의 신체 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6개월 내의 임신 성공 여부를 분석하였다.

(결론)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난임 여성에서 주당 평균 3,000 MET-min 이상의 건강증진형 활동과 임신과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로 볼 때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여성에서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일부러 권하는 것이 6개월 내 임신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중재적 연구를 통해 운동과 임신의 연관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대와 달리 운동량이 늘어날 때 임신율이 좋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체활동은 골반 장기의 혈류를 늘리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신체활동은 오히려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율신경계 및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을 통해 혈장의 코티졸, 카테콜라민의 증가를 유발하며,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신체활동은 황체화호르몬과 프로락틴의 분비를 자극하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뉴런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식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높은 코티졸 수치는 난자가 수정이 안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난자의 발달을 지연시키고 배아 이식을 감소시키며 난소의 과립막의 스테로이드합성을 방해하여 시험관 임신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이 연구에서 신체활동량이 더 많은 군에서 보정된 체외수정 임신율이 기대와 달리 기준 군에 비해 높아지지 않은 것을 설명해 준다.

한규은, 김민영(2021), 난임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신체활동 강도를 중심으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5(3), 197-203.

(연구목적)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 중 건강검진을 완료한 사람들을 전수 조사하여 우울과 신체활동이 향후 2년간의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함.

(결론) 신체활동의 강도가 난임인 여성의 향후 2년간의 출산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중간 정도의 신체적 활동을 하는 것이 출산의 확률 높인다는 것을 보임. 따라서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빠르게 걷거나 수영 등을 통하여 골반 근육을 풀어주거나 필라테스나 요가 등을 통해 전신의 긴장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함.

##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본 조례안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건강증진 및 임신과 출생률 향상을 위한 건강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

### 3 종합의견

- 생식건강과 관련된 난임은 영양과 운동 등의 건강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간과되고 있어 이를 조례에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임신과 출생률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우선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조작하여 임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난임시술은 의료시술임. 특히 난임시술 과정에서 시술여성들은 우울 및 감정기복, 체중 증가·부종, 복부팽만·소화불량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난임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 또는 질환을 관리하고 난임부부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술비용 지원 외에도 건강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상위법에서도 가임기 여성을 포함하는 모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단, ‘영양’과 ‘운동’ 등의 건강지원과 난임부부 임신 및 출산 관련성에 관한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과학적으로 효과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난임부부 건강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1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박춘선, 곽향기,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재진,  
김혜지, 남궁역, 박 석,  
박유진, 신동원, 신복자,  
유정인, 이종배, 이종태,  
이효원, 정준호, 최윤희,  
최호정, 황유정 의원(20명)

찬 성 자: 고광민, 구미경,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성연,  
박영한,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옥재은,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영실,  
이은림, 이종환, 이희원,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33명)

## 1. 제안이유

- 현재 위기에 처한 저출생 문제의 주요 대응 정책으로 난임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시술비용 지원 및 난임 우울증 심리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난임은 생식건강과 관계된 부분으로 영양과 운동 등 건강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조례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증진 및 임신과 출생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7조 제1항 제4호 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로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지원 사업을 신설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lt;신   설&gt;</u></p> <p>4. (생   략)</p> <p>② (생   략)</p>	<p>제7조(지원사업)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